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3. 9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인상액 30만원범위내에서 각 시·군이 자율 조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.

○ 장려수당이 200,000원 범위내에서 270,000원 범위내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의료업무수당 30만원범위내에서 인상

·급지구분

- 갑지 전문의 월 609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09,000원 이하(300,000원인상)
- 갑지 일반의 월 518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818,000원 이하(300,000원인상)
- 을지 전문의 월 695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95,000원 이하(300,000원인상)
- 을지 일반의 월 614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14,000원 이하(300,000원인상)

·전임전문직공무원

- 5년이상 가급 월 1,012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1,312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5년이상 나급 월 673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73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4년이상 가급 월 1,006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1,306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4년이상 나급 월 667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67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
- 3년이상 가급 월 1,000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1,300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3년이상 나급 월 661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61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2년이상 가급 월 995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1,295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2년이상 나급 월 656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56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2년미만 가급 월 989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1,289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- 2년미만 나급 월 650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950,000원이하(300,000원인상)

○ 장려수당 200,000원 범위내에서 270,000원 범위내로 변경

·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
- 월 200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270,000원 이하(70,000원 인상)

·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
- 월 200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270,000원 이하(70,000원 인상)

· 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
- 월 200,000원 이하(기존) → 월 270,000원 이하(70,000원 인상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○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9 제18호 장려수당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

○ 의료업무수당 : 당초 673,000원×2명×12월 = 16,152천원
추경 145,000원×2명× 6월 = 1,740천원

○ 장 려 수 당 : 당초 200,000원×6명×12월 = 14,400천원
추경 70,000원×6명× 6월 = 2,520천원

□ 사전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참고사항

○ 의료업무등의 수당 인상안 통보(경기도 자치 12130-2451, '03.06.19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과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최 홍 기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인사담당 신 성 현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권 경 애 (2116)

[별표1]

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

1. 지급대상기관 : 보건소,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
2. 급직구분

지 역 등 급	전 문 의	일 반 의
갑 지	월 909,000원 이하	월 818,000원 이하
을 지	월 995,000원 이하	월 914,000원 이하

비 고 1.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2. 갑지는 도청소재지 및 시로, 을지는 병지를 제외한 10개군으로, 병지는 여주, 파주, 연천, 포천, 가평, 양평, 옹진 등 7개시군으로 한다.

[별표2]

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

등급별 /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 이하
2년 이하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 이하

비 고 1. 가급 및 나급은 지방공무원직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.

2.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[별표4]

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1.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 이하
2.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 이하
3. 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 이하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〔별표1〕

현 행			개 정 안		
지역등급	전문의	일반의	지역등급	전문의	일반의
갑 지	월609,000원 이하	월518,000원 이하	갑 지	월909,000원 이하	월818,000원 이하
을 지	월695,000원 이하	월614,000원 이하	을 지	월995,000원 이하	월914,000원 이하

〔별표2〕

현 행			개 정 안		
등급별 /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	등급별 /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012,000원	월 673,000원이하	5년 이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이하
4년 이상	월 1,006,000원	월 667,000원이하	4년 이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이하
3년 이상	월 1,000,000원	월 661,000원이하	3년 이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이하
2년 이상	월 995,000원	월 656,000원이하	2년 이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이하
2년 미만	월 989,000원	월 650,000원이하	2년 미만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이하

〔별표4〕

현 행		개 정 안	
지 급 대 상	지급액	지 급 대 상	지급액
1.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00,000원 이하	1.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 이하
2.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00,000원 이하	2.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 이하
3.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00,000원 이하	3.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 이하

관계법령발췌서

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

[별표 9]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

18. 장려수당	가. 지하철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검수·구내보선·철도토목·철도건축·전기·통신·신호·보안·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자	6급 및 6등급이상 : 월 20,000원 이하	
		7급 및 7등급 : 월 18,000원이하	
		8급 및 8등급 : 월 16,000원이하	
	나.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·보수·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자(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)	9급 및 9등급 : 월 14,000원이하	
		10등급 : 월 12,000원 이하	
		고용직 1종·2종 : 월 10,000원 이하	
	다.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·급수·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	5급 및 5등급이하 : 월 50,000원 이하	
		고용직 : 월 20,000원 이하	
		(가산금)	
		●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·보건·화공직렬의 기술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	
		● 연구관 : 월 40,000원 이하	
		● 연구사 : 월 30,000원 이하	
		● 기타 기술직렬공무원 : 월 20,000원 이하	
	라. 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레기처리장등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	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	
	마. 화장장·화장장관리사무소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		
	바. 공원묘지·납골당등 묘지나		

		납골당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	
	18. 장려수당 <<시행일 2003.7.1>>	가. 지하철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검수·구내보선·철도토목·철도건축·전기통신·신호·보안·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자	● 6급 및 6등급 이상 : 월 40,000원 이하 ● 7급 및 7등급 : 월 38,000원 이하 ● 8급 및 8등급 : 월 36,000원 이하 ● 9급 및 9등급 : 월 34,000원 이하 ● 10등급 : 월 32,000원 이하 ● 고용직 1종·2종 : 월 30,000원 이하
		나.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·보수·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자(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)	
		다.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·급수·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	● 5급 및 5등급 이하 : 월 50,000원 이하 ● 고용직 : 월 20,000원 이하 (가산금)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·보건·화공직렬의 기술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● 연구관 : 월 40,000원 이하 ● 연구사 : 월 30,000원 이하 ● 그 밖의 기술직렬공무원 : 월 20,000원 이하
		라. 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레기처리장 등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	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		마. 화장장·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	
		바. 공원묘지·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·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	